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위태양 용어 순화〉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51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구체적 <u>행위태양</u>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u>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u> 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u>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u> 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구체적 <u>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u> 제시 의무) ① ----- ----- ----- <u>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u> ----- <u>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u> -----.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u> 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u>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u> ----- ----- -----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u>행위</u>	③ ----- ----- -----.

<u>태양</u>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u>자기</u>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u>침해행위</u>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u>의 내용·방식·형태 등</u>----- ----- -----. ④ -----<u>자기</u>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 ----- -----<u>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u>----- -----.
---	---

현행 「특허법」 제126조의2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 제목 및 각 항에서 규정하는 ‘태양(態樣)’은 문맥상 ‘생긴 모습이나 형태’¹⁾를 뜻하는 것이나, 동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로서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동 용어는 현행 「특허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법률 용어로서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 표준국어대사전

참고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법령문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태양(熊樣)’을 ‘형태’ 또는 ‘모습이나 형태’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범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문의 순화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뒤에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라는 표현에 ‘행위태양’의 의미가 포섭되어 있어서 ‘등’을 추가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법문의 명료성을 고려하여 ‘등’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³⁾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024.12.19.)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2023, 부록 정비권고용어 p.73

3) 국회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p.1003 참고

“규제법, 처벌법 등 국민에게 침익적인 내용의 법률에서 ‘등’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등’의 사용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468